

신규대비표

현 재	개 정 (안)
<p>제17조(전과)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. 단, 전과의 시기는 입학 후 2학기 이내로 한다.</p>	<p>제17조(전과)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 및 변경 희망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 혹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. 단, 전과의 시기는 입학 후 2학기 이내로 한다.</p>